

청주지방법원 2023. 9. 27 선고 2021가합5254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안창환

피고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유재풍, 박종일

변론 종결2023. 7. 12.

판결 선고2023. 9. 27.

## 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1. 별지 부동산 목록 1, 2, 3 기재 각 부동산 중, D와 피고 B 사이에 각 3/5 지분에 관하여, D와 피고 C과의 사이에 각 2/5 지분에 관하여, 각 2019. 1. 9.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.
2. 피고들은 D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1, 2,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9. 1. 11. 접수 제4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3.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2/5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

진천등기소 2019. 12. 12. 접수 제218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4.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3 기재 부동산 중 3/5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

진천등기소 2019. 12. 12. 접수 제218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## 이 유

### 1. 원고의 주장

원고는, 원고가 운영하던 사업장의 이전을 위하여 E로부터 2016. 5. 20. 충북 진천군 F 토지(이하 '원고 토지'라 한다)를 매수하여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, D는 원고 토지와 이웃한 G 토지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 및 그 지상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의 소유자인 사람이다.

원고가 원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, 원고 토지 중 도로와 접하는 좁고 긴 형상의 통로 부분(이하 '이 사건 통로 부분'이라 한다)이 이 사건 토지 전면부의 우측 절반 정도를 가로 막고 있었고, 이에 D는 E와 사이에, E가 이 사건 통로 부분을 분할하여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위 통로 부분을 원고의 나머지 원고 토지를 위한 진입도로로 개설하는데 협조하기로 약정하였다.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E는 원고에게 양해를 구하고 2016. 3. 16. D와 위 통로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, 위 통로 부분을 H으로 분필하여 2016. 6. 27.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그러나 D는 위 통로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도 원고를 위한 진입로 개설에 전혀 협력하지 아니하였는바, 이에 원고는 원고의 사업장 이전 지연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었는데, 피고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도로 D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으므로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 한다),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D와 피고들 사이의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위 증여계약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.

### 2.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

원고가 D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D에 대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한다. 그런데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청주지방법원에 원고의 사업장 이전 지연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,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(위 법원 2022. 5. 13. 선고 2021가단58700 판결),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(위 법원 2022. 5. 4. 선고 2022나53970 판결) 2023. 5. 24.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, 이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인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, 달리 원고의 피보전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피보전채권인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### **3. 결론**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**재판장판사**이지현

**판사**성찬용

**판사**서보람

**별지**